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02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602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9.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1) 문예회관(가장복컴 內)은「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에 따라 원도심 권역의 문화예술 수요 대응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로 2027년 3월 개관 예정임

2)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회 동의)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 운영

2)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

3) 필 요 성: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관리

4) 위탁사무의 내용: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대상 문화시설

- (시 설 명)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 (소 재 지) 가장동 39-3번지 일원
- (개 관 일) 2027. 3월(예정) / (규 모) 1,165.86㎡ * 가장복컴 연면적 6,953.89㎡
- (주요시설) 공연장, 전시장(대・소), 미술공동작업실, 공용연습실, 악기연습실(3개) 등 / (운영인력) 5명(비상근 관장 포함)

6) 위탁기간: 2027. 1. ~ 2029. 12.(3년)

7) 수탁기관의 자격

- 공고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8) 수탁기관 선정: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9) 소요예산(민간위탁금): 245,470천원(원가계산 검토 결과)

(단위: 천원)

계	인건비	경상경비	공공요금	사업비	일반관리비
245,470	122,776	34,468	46,030	30,000	12,196

※ 관저문예회관 운영 수준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옥주)

○ **본 동의안**은 문예회관 「가장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은 원도심 권역의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7년 3월 개관 예정으로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수탁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및「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602

제출년월일: 2026. 8. 27.
제 출 자: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가. 문예회관(가장복컴 內)은「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에 따라 원도심 권역의 문화예술 수요 대응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로 2027년 3월 개관 예정임

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회 동의)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 운영

나.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

다. 필 요 성: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관리

라. 위탁사무의 내용: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마. 대상 문화시설

- (시 설 명)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 (소 재 지) 가장동 39-3번지 일원
- (개 관 일) 2027. 3월(예정) / (규 모) 1,165.86㎡ * 가장복컴 연면적 6,953.89㎡
- (주요시설) 공연장, 전시장(대・소), 미술공동작업실, 공용연습실, 악기연습실(3개) 등 / (운영인력) 5명(비상근 관장 포함)

바. 위탁기간: 2027. 1. ~ 2029. 12.(3년)

사. 수탁기관의 자격

- 공고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아. 수탁기관 선정: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자. 소요예산(민간위탁금): 245,470천원(원가계산 검토 결과)

(단위: 천원)

계	인건비	경상경비	공공요금	사업비	일반관리비
245,470	122,776	34,468	46,030	30,000	12,196

※ 관저문예회관 운영 수준 반영

3. 참고사항

가.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구민 주권, 행복 도시 서구

2026. 08.

문예회관(가장복컴內)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체육과/문화팀

문예회관(가장복컴內)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원도심권역**의 문화예술 수요 대응 및 문화예술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예회관(가장복컴內)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임**(2027. 3월 개관 예정)**

Ⅰ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및 제39조(국고보조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문예회관 시설현황

○ (위　　치) 가장동 39-3번지 일원

○ (건축규모) 연면적 6,953.89㎡ /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동행정복지센터: 1,211.67㎡, **문예회관: 1,165.86㎡,** 공용공간(주차장 등) 4,576.36㎡

○ (주요시설) **공연장, 전시장(대/소), 미술공동작업실, 공용연습실, 악기연습실(3)**

층 별	면 적(㎡)	주요시설(1.165.86㎡)	비 고
지상2층	626.37	공연장(222석/2~3층), 단체대기실, 대기실(남,여), (소)전시장, 미술공동작업실	
지상3층	539.49	공용연습실, 멀티룸(악기연습실)①~③, (대)전시장, 사무실	

Ⅲ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명칭공모 및 의회 동의 (제298회 1차 정례회)	⇨	조례 개정 및 27년 본예산 확보 (제299회 2차 정례회)	⇨	수탁기관 공모 선정 (위·수탁 협약)	⇨	문예회관 개　　관
2026.8.		2026.9.		2026.11.~12.		2026.12.		2027.3.

Ⅳ 문예회관 운영계획

○ (개관시기) 2027. 3.(예정)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민간위탁 필요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현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중으로 운영의 일원화 필요

○ (운영인력) 총 5명(관장포함)

구 분	관 장	팀 장	직 원			비 고
	비상근	운영·관리 총괄	회계	시설 대관 및 관리	공연·전시 기획 및 홍보	
5명	1	1	1	1	1	환경(청소): 공용공간 및 洞 일괄 용역 예정

○ (주요사업)

- 기획공연: 계절·주제별 문화공연, 지역 청년예술가 공연 등
- 기획전시: 지역작가·신진작가 초대전, 우수작품 전시회 등
- 대관사업: 공연장, 전시장, 미술공동작업실, 공동연습실, 악기연습실 대관

○ (운영시간) ※ 관저문예회관 운영시간과 동일

이 용 시 간	휴 관 일
○ (화~일요일) 09:00~18:00 ○ (야 간 대 관) 18:00~22:00	○ (정기휴관)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 (임시휴관) *기타 문예회관 사정에 의해 정하는 날
*기타 문예회관 사정에 의해 정하는 날 : 자체 안전검사 실시, 공연장 보수 등	

조감도-가장복합커뮤니티센터 ※ 內 문예회관(2~3층)



Ⅴ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 사전조사

- 문화예술 수요 대응을 위한 원도심권역 內 문화시설이 요구되며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필요

▢ 적정성 검토

○ (검토사항) 위탁사무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서비스 공급 대상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필요
③ 경제적 효율성	지자체 직영보다는 수탁기관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로 경제적 효율성 기대
④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문화예술 공연 등의 기획 및 추진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수탁자에 의한 운영이 효과적이며, 문화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능력 필요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성과평가실시 후 재계약 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 **신규 민간위탁**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처리상황의 감사)에 따라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년 시설물관리, 인력운영, 회계관리 등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실시
⑦ 공공·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현재 서구문화원(탄방동/둔산권), 관저문예회관(관저동/신도심권) 旣 운영 중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원도심권역(복수동, 도마동, 가장동 등) 內 조성 필요

○ (검토결과)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 기획 사무의 경우,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써 전문적 경험과 운영 지식을 갖춘 민간의 참여 확대로 문화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적정**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Ⅵ 민간위탁금 원가계산 검토

○ (검토사항) 지출원가(인건비, 경상경비, 공공요금 등), 수입원가 등

○ (검토결과) (단위: 천원)

계	인건비	경상경비	공공요금	사업비	일반관리비
245,470	122,776	34,468	46,030	30,000	12,196

※ [붙임-1] 원가계산서 참고 / 旣 운영 중인 관저문예회관 운영 수준 반영

Ⅶ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대상기관)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 (위탁기간) 2027. 1. ~ 2029. 12.(3년)

○ (위탁사무)

- 문예회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기획공연 전시 등을 통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 공연장 및 전시장 등 시설 대관 등
-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2027년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계	인건비	경상경비	공공요금	사업비	일반관리비
245,470	122,776	34,468	46,030	30,000	12,196

□ 명칭 공모 선정

○ (선정방법) 문예회관 명칭 공모→명칭(안) 검토 선정→구민 설문조사 후 확정

※ 문예회관 명칭선정 공모계획 별도 수립

▢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

○ **(선정방법)**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 **(공고기간)** 2026. 11월 예정 / 구 홈페이지 행정고시 공고

※ 문예회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및 심의)** 2026. 12월 중(10인 이내 구성) ※ 심의 후 자동 해산

○ **(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안 건)** 문예회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위원위촉)**

- 서구 소속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4 미만
- 서구의원(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제외) / 의회추천
-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관련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심사방법)**

- 신청업체 제안서 검토,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후 일괄 평가
- 평가표에 따른 절대평가로 적격 여부 판단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계획 별도 수립

▢ 위 · 수탁협약 체결

○ **(체결시기)** 2026. 12월 예정

- 위탁기간: 2027. 1. ~ 2029. 12. 31.(3년) ※ 2027. 1. ~ 2. 개관 준비
- 위탁내용: 문예회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Ⅷ 향후 추진일정

일 정	추진사항	추진내용
2026. 8~9月	의 회 동 의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위탁시작 60일 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6. 9. 7.(월) ~ 9. 22.(화) / 제298회 제1차 정례회
	명 칭 공 모 선 정	· 명칭 공개모집 / 구 홈페이지 공고 · 명칭 선정 설문조사 / 구 홈페이지 설문조사
2026. 11~12月	조례개정 및 본예산 확보	· 조례안 의회 제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10일전 · 조례안 및 본예산 의결: 2026. 11. 13.(금) ~ 12. 16.(수) / 제299회 제2차 정례회 * (조례 전부개정) 관저문예회관→문예회관 / 명칭변경 * (2027년 본예산) 민간위탁금 및 가구·물품비 등
2026. 11月	수 탁 기 관 공 개 모 집	· 공개모집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
2026. 12月	수 탁 기 관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로 구성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위 · 수 탁 협 약 체 결	· 위·수탁 협약 체결(문예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2027. 1~2月	개 관 준 비	· 수탁기관 직원 채용(공개모집) ·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2027. 3月	개 관	· 문예회관 개관 ※ 개관식 계획 별도 수립

붙임 1. 민간위탁금 원가계산서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붙임-1 **민간위탁금 원가계산서**

(단위: 원, %)

구 분 / 비 목			금액	2027년 위탁금	비고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4대보험	175,394,100	122,775,870(70%)	
		소 계(A)	**175,394,100**	**122,775,870**	
	경상경비	회계검사 수수료 2,000,000원×1회	2,000,000	2,000,000	
		복사기 임차료 120,000원×12월	1,440,000	1,008,000(70%)	
		정수기 임차료 50,000원×3대×12월	1,800,000	1,260,000(70%)	
		에어컨 청소 및 정비 2,700,000원×1회	2,700,000	2,700,000	
		공연장 및 전시장 청소 용역 2,100,000원×1회	2,100,000	2,100,000	
		무대시설 유지관리비 1,300,000원×2회	2,600,000	2,600,000	
		문자발신료 125,000원×12월	1,500,000	1,050,000	
		홈페이지 개설 및 유지관리×1식	21,750,000	21,750,000	
		소 계(B)	**35,890,000**	**34,468,000**	
	공공요금등	문화예술회관 협회비	7,000,000	7,000,000	
		전기요금 3,882,500원×12월	46,590,000	32,613,000(70%)	
		도시가스요금 424,000원×12월	5,088,000	3,561,600(70%)	
		전화요금 186,250원×4분기	745,000	521,500(70%)	
		인터넷사용료 194,500원×4분기	778,000	544,600(70%)	
		세무기장료 192,500원×12월	2,310,000	1,617,000(70%)	
		유선방송료 32,500원×4분기	130,000	91,000(70%)	
		우편발송료 29,000원×4분기	116,000	81,200(70%)	
		소 계(C)	**62,757,000**	**46,029,900**	
	사업비	기획공연 · 전시	**30,000,000**	**30,000,000**	
		소 계(D)	**30,000,000**	**30,000,000**	
일반관리비(E)=[(A+B+C)×6%]			**16,442,460**	**12,196,420**	
총 지 출(F)=(A+B+C+D+E)			**320,483,560**	**245,470,190**	
수입원가	대 관 료(2025년 관저문예회관 실 대관수입)		36,000,000	0	2026년 문예회관의 수입액 0원
	총 수 입(G)		**36,000,000**	**0**	
총 원 가(F-G)			**284,483,560**	**245,470,190**	

※ 2027. 3월 개관 예정으로 민간위탁금 70%(9개월분) 산정
※ 지출 및 수입원가는 기 운영중인 관저문예회관 참고 반영
※ 2027년 수입액 반영하여 2028년 민간위탁금 산정

붙임-2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의 문화적·예술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
4. 그 밖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관할 공공단체 및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그 장을 포함한다),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공공·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는 사무로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위탁시설 또는 그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위탁 동의안)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재계약인 경우에 한함)
10. 그 밖에 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수준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 소속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위탁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
3. 위탁사무와 관련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수탁대상기관에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사무와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8.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계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참고 1 **가장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규모**

층별	시설 규모		운영주체
지상3층 (1,634.79㎡)	동 행정복지센터 (412.36㎡)	· 프로그램실(GX룸)(152.1㎡) · 프로그램실(요가교실)(84.8㎡) · 프로그램실(탁구실)(79.2㎡) · 프로그램실(미술실)(77.04㎡) · 용역원 휴게실(19.22㎡)	가 장 동
	문예회관 (539.49㎡)	[공연시설] · 공연장(115.56㎡), 조정실(12.04㎡) ↳ (중층) 공조기실(95.2㎡), 계단실(42.92㎡) · 공용연습실(34.96㎡) · 멀티룸(악기연습실)(18.75㎡) · 멀티룸(악기연습실)(18.75㎡) · 멀티룸(악기연습실)(18.75㎡) · 창고(46.98㎡) [전시시설] · (대)전시장(92.88㎡) · 사무실(42.7㎡)	문화체육과
	공용공간 (682.94㎡)	· 복도 등 공용	가 장 동
지상2층 (1,371.58㎡)	동 행정복지센터 (248.56㎡)	· 구내식당(67.24㎡), 조리실(28.46㎡) · 창고(16.06㎡) · 중회의실(116.56㎡) · 창고(20.24㎡)	가 장 동
	문예회관 (626.37㎡)	[공연시설] · 공연장(152.07㎡), 무대(112.2㎡) · 단체대기실(23㎡), 계단(11㎡) · 대기실(여)(25.81㎡), 창고(2.32㎡) · 대기실(남)(25.81㎡), 창고(2.32㎡) · 창고(33.55㎡) · 수유실(20.24㎡) [전시시설] · (소)전시장(63.25㎡) · 미술공동작업실(154.8㎡)	문화체육과
	공용공간 (496.65㎡)	· 복도 등 공용	가 장 동
지상1층 (1,112.51㎡)	동 행정복지센터 (550.75㎡)	· 민원실(204.72㎡) · 민원상담실(18.65㎡) · 직원휴게실(15.35㎡) · 동장실(21.47㎡) · 서고(34.78㎡) · 통신실(12.09㎡) · 방재실(8.97㎡) · 공용주방(61.92㎡), 창고(10.8㎡) · 주민자치회실(43.2㎡), 창고(10.8㎡) · 소회의실(28.08㎡) · 카페(20.16㎡), 열린도서관(59.76㎡)	가 장 동
	공용공간 (561.76㎡)	· 복도 등 공용	가 장 동
	주차장 (옥외)	· 주차대수: 7대(전기차 5, 장애인 2)	가 장 동
지하1층 (2,835.01㎡)	주차장 (2,835.01㎡)	· 주차장(2,374.83㎡) ↳ 83대(일반 28, 확장 43, 경차 9, 장애인 3) · 발전기실(29.52㎡) · 전기실(104.88㎡) · 기계실(146.05㎡) · 재활용창고(34.56㎡), 연료전지실(27.84㎡) · 창고(16.52㎡) · 계단실, 홀 등(100.81㎡)	가 장 동

참고 2 **관저문예회관 기본 현황**

□ 시설현황



위 치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관저동)
개관일	2012. 9. 1. * 준공: 2012. 8. 12.
건축규모	4,770.37㎡ / 지하 2층, 지상 3층 · 문예회관 1,403.41㎡ · 주차장 3,366.96㎡
주요시설	공연장(254석), 전시실(82.66㎡), 다목적실2(118.84㎡), 주차장(94면)

※ 공영주차장은 서구청 주차행정과에서 별도 관리·운영(주차장특별회계)

□ 위수탁 현황

○ 위·수탁기간: 2025. 5. 1. ~ 2027. 12. 31.(2년 8개월)

○ 수탁기관 현황: (사)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

소속	대표(회장)	경력	소속	대표(관장)	경력
(사) 대전 예총	 성낙원	•現) 대전예총 회장 •現) 한국예총 부회장 •前)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전시지회장	관저 문예 회관	 주정관	•現) 관저문예회관 관장 •現) 대전예총 부회장 •現)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대전시지회장

○ 운영인력: 6명(팀장 1, 대리/주임 4, 환경 1) ※ 관장: 비상근

○ 2026년 위탁금: 386,310천원(구비 100%)

○ 2026년 시설 대관 현황 / 2026. 7월말 기준

구 분	계	공연장	전시장	다목적실
대관건수	96건	58건	36건	2건

□ 2026년 주요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기획공연(총 12회)	· 계절별·주제별 문화공연, 뮤지컬 공연, 스테이지 거리공연 등
기획전시(총 4회)	· 지역작가, 신진작가 초대전, 우수작품 전시회 등
문화강좌(17개 강좌)	· 언어, 음악, 노래교실, AI활용 교육 강좌 등 / 4개월씩 3학기 운영
행복극장(총 24회)	· 상영작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영화 상영

※ 문예회관 공연 예술기획·제작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선정/컨설턴트(1명) 근무중

※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신작 공연 콘텐츠 제작) 공모 선정(5천만원 지원, 자부담 20%) 추진중

참고 3 서구 관내 문화기반 시설 현황

연번	문화기반시설		주소	비고
1	도서관	갈마도서관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27번길 138 (갈마동)	
2		둔산도서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63 (둔산동)	
3		월평도서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664 (갈마동)	
4		가수원도서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91-11 (가수원동)	
5		서구어린이 도서관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로 25 (정림동)	
6	박물관	배재대학교 박물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대학
7	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만년동)	
8		이응노미술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7(만년동)	
9		남철미술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73-1(괴정동)	사립/휴관
10	생활문화센터	둔산1동 생활문화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5 (둔산동)	
11	문예회관	대전예술의전당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만년동)	
1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8(만년동)	
13		관저문예회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관저동)	
14	문화원	서구문화원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33번길 38(탄방동)	